경기도 공고 제2024-831호

2024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정경영, 사회공헌, 지역사회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도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인증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

○ 관련조례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 인증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3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재인증 대상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규모 : 10개사 (중소기업 8개사, 사회적경제조직 2개사), 재인증 병행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노사동반 조직문화, 사회공헌, 사회문제해결노력,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 선발방법 : 사업공모 → 법위반조회 및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 인증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착한기업 상표사용권, 인센티브 지원금 등

2.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4. 4. 1.(월) ~ 4. 19.(금) 17시

○ 선정규모 : 신규인증 10개사 및 재인증 병행

○ 신청대상

- (신규인증) 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설치·운영 중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1) 업력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2) 소재지 기준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 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신청 및 평가제외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신청제외 업종(6페이지 참조)

○ 선정절차

① 공고·접수	② 서류심사	③ 법위반조회	④ 현장실사	⑤ 심의위원회	⑥ 결과통보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정량평가) ▶	관련기관 및 시·군조회 ▶	임직원 인터뷰 등 ▶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	담당자 개별 메일 안내
4월	5월	5월	6~7월	8월	9월

3. 신청접수 안내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신청양식 : 이지비즈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식 :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 업로드**

※ 파인드시스템 : 민원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자동 제출 시스템

○ **(접수기간)** 2024. 4. 1.(월) ~ 4. 19.(금) 17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세부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PDF파일로 업로드

※파일명 : (A)경영자 관심 및 의지_기업명, (I)CSR교육실적_기업명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신청서류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필수	• [서식1호] 인증사업 참여 신청서	각 파일에 직인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필수	• [서식2-1호, 2-2호] 착한기업 자기평가표 및 실적 세부내용	
필수	• [서식3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 [서식4-1호] 법위반 사실 확인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 [서식4-2호]법위반 사실 (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	• [붙임] 착한기업 신청 기업 현황	내용 기입 후 제출
2. 요건 검토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자동발급
선택	• 공장등록증명 **※본사 경기도 외, 공장 경기도 소재일 경우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신청자격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서 등 신청 자격별 상이**	
필수	• 재무제표('21년~'22년)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3년)	자동발급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년~'23년 12월 귀속분**	
필수	• 국세 완납증명서	
필수	•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1년~'23년 귀속분**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3. 가산점 증빙서류		
선택	• CSR 온/오프라인 교육실적 (5시간 이상)	관련 증빙서류 별첨
	•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참여실적	
	• 경기도 생활임금 협약사업 추진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 경기도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 · 상담」 참여 실적	
	• 임신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 · 평가 우수기업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접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함.
- 신규인증과 재인증의 제출서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증빙자료는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접수 이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4. 인증기업 혜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인증패·현판 수여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지원금 지급 ※ 신규인증에 한함

- 지원한도 : 인증기간(3년)동안 최대 2,00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 인증 1년차1,000만원 / 인증 2,3년차 500만원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80%, 기업자부담 20% 이상 (VAT 제외)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세부과제	
마케팅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지원사업
CSR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인증취득, 봉사활동, 근무환경 개선 등)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및 타 지원사업 가점 제공

구 분	인센티브 내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0)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1점] •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2점] • 중소기업 개발 · 생산 ·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2점] •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2점]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신청[1점] •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신청[1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신청[1점] •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1점] • 소재 · 부품 · 장비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1점] •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신청[1점]
경기테크노파크 (3)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신청[2점]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신청[1점]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2점]
경기신용보증재단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5점]
경기도주식회사 (1)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1점]

5. 유의사항

○ (인증취소) 아래 항목 해당 시 인증기간 중 인증 취소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불법·부당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평가 및 지원절차에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지원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19	기타미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56193	치킨 전문점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912	가정용세탁업
	56132	이동 음식업		96913	세탁물공급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91	예식장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191	제과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상기 외에도 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신청 및 지원 제외 가능

○ 법 위반 사실 조회 기업 관련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기회 부여

<대상 분야 및 관련 법령>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조건

- **관련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업이 제출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반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ESG팀

사업문의	문지운 대리	031-259-6284	un_moon@gbsa.or.kr
전산문의	이지비즈 전산담당자	031-259-6299	-

※ 접수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